

【 11 】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제정안

제출년월일 : 1996. 6. 5.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지역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양주군과 의료 보험 조합간의 업무추진 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군수 및 읍·면장은 의료보험조합지소의 설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지방세 과세자료, 피보험자의 신상이동 현황 제공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함.

(안 제2조)

○ 군수는 읍·면지역의료보험료지원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규칙을 제정 운영토록 함. (안 제3조)

○ 읍·면장은 지소 근무자가 의료보험 업무를 위한 각종 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토록 함. (안 제4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군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군, 읍·면 및 리·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항) ①군수 및 읍·면장(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 읍·면사무소에 의료보험조합지소(이하“지소”라 한다)를 설치할수 있도록 시설 등 지원
2.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 등의 제공
3.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득실 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주민의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
4. 의료보호대상자의 변경, 군입대 및 전역, 시설 등의 수용 및 퇴소현황의 제공

②리·반장은 보험료 고지서의 배부 및 징수, 피보험자의 자격확인업무 등을 적극 지원한다.

③군수 및 읍·면장은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과세자료기 보험료 신청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가액의 조사방법 등을 따로 정할수 있다.

④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경유방법등은 군수, 읍·면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규정 제정등) ①군수는 읍·면지역의료보험 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소집, 의결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의결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사무치리에 관한 사항

가. 협의회 간사는 지소장으로 한다.

나. 문서의 접수, 발송, 보관, 직인관수 등의 일반적인 사무는 협의회 간사가 담당한다.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①읍·면장은 의료보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 상황을 수시 지도 점검하는 등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공부열람등) 읍·면장은 지소 근무자가 의료보험 업무를 위해 주민 등록표, 과세대장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